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08호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50호(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51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 고시) 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52호(도시공원시설 야영장(너나들이캠핑장)사용료 고시) 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53호(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부구역 해제 고시) 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54호(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1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55호(인천도시계획시설(사근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56호(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18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57호(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항만시설(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9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58호(공공주택 사업계획 변경승인(검단신도시 AB14BL) 고시) 22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444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2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449호(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2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450호(인천광역시 도시교통 종합계획(안) 열람 공고) 2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451호(인천도시계획시설(대로1-11호선, 중로1-57호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2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452호(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2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454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3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457호(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3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463호(일반측량업 등록 공고) 32
- 인천계양소방서공고 제2018-13호(다중이용업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33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8-376호(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고) 34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97호(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8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98호(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2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8-236호(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0

군·구

- 인천광역시미추홀구고시 제2018-153호(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59

회 람							
--------	--	--	--	--	--	--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50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 032-440-1712) 및 서구청(도시개발과, ☎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10. 29.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405번길 411(원창동 336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명칭: 인천화력 기력 1, 2호기 철거 및 부대건물(정비동, 방재센터) 건설공사

3.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면적: 306,622.5㎡
- 규모: 65,339.44㎡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한국중부발전(주) 대표이사 박형구
- 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2017. 2.~2018. 10.
 - 변경: 2017. 2.~2019. 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 없음)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51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2018. 2. 9.)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인천광역시장

제1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제3조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2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제4조제6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 수는 제외한다)의 2.5퍼센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52호

도시공원시설 야영장(너나들이캠핑장)사용료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15조에 따라 도시공원시설인 너나들이캠핑장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0. 29.

인천광역시장

1. 대 상 : 인천대공원사업소
2. 대상시설 : 인천대공원 야영장 (너나들이캠핑장)
3. 시설사용료

시설명	구 분		규 격	가 격	선택옵션등 (별도요금)	비고
	면수					
입 대 자 가	계	103				수 영 지 역
	캐빈텐트 (테크포함)	33	3m×4m	44,500원	▶ 냉·난방 시설 : 18,000원 ▶ 4인기준 추가시 인당2,000~ 4,000원	
	그늘막 캐빈텐트 (테크포함)	28	캐빈텐트(3m×4m) 그늘막(3m×5m)	65,000원	▶ 냉·난방 시설 : 18,000원 ▶ 4인기준 추가시 인당2,000~ 4,000원	
	몽골텐트 (테크포함)	22	5m×5m	50,000원	▶ 냉·난방 시설 : 30,000원 ▶ 입장료 인당 : 2,000~4,000원	
가 족 단 위 쉼 터 (노 지)		1,500㎡	4인기준(3×4m) (4인이상설치불가)	입장료(인당) 2,000~4,000원	▶ 숙영금지 (당일 08:00~20:00 이용가능)	당 일 사 용

※ 일일기준 시간 : 당일 11시 입실 익일 10시 퇴실

※ 환불규정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6-15호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입장료

만6세 이하	국가유공자·장애인, 고령자(만65세 이상), 만12세 이하	성 인	비 고
무 료	2,000원	4,000원	

4. 기준

▶ 이용시간은 당일 11:00부터 다음날 10:00까지

5. 적용시기 : 2018.11.01. 사용부터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53호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부구역 해제 고시

(해제구역 : 미추2,3,4,5,6,7,B 정비구역)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91호(2008.05.26.), 제2010-139호(2010.05.24.)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일부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해제 정비구역 명칭

- 미추2,3,4,5,6,7,B 정비구역

2.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사업구분	위치	면적(m ²)	구역지정(고시일)
당초	미추2구역	재개발	미추홀구 주안동 510-32번지 일원	112,87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39호(2010.5.24.)
변경	해 제				
당초	미추3구역	재개발	미추홀구 주안동 411-31번지 일원	114,58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39호(2010.5.24.)
변경	해 제				

구분	구역명	사업구분	위치	면적(m ²)	구역지정(고시일)
당초	미추4구역	재개발	미추홀구 주안동 259-16번지 일원	71,78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39호(2010.5.24.)
변경	해 제				
당초	미추5구역	재개발	미추홀구 주안동 594-4번지 일원	152,147.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39호(2010.5.24.)
변경	해 제				
당초	미추6구역	재개발	미추홀구 주안동 549-16번지 일원	94,39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39호(2010.5.24.)
변경	해 제				
당초	미추7구역	재개발	미추홀구 주안동 450-11번지 일원	107,07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39호(2010.5.24.)
변경	해 제				
당초	미추B구역	재개발	미추홀구 도화동 444-18번지 일원	22,34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39호(2010.5.24.)
변경	해 제				

3. 정비구역 지정 해제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 추진위원회가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등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4.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에 대한 사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 단,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지역을 준치지역으로 전환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결정이 있기 전에는 종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되지 않음.

5. 지형도면: 별도 첨부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6.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재생정책과, 032-440-4468) 및 미추홀구청(도시창생과, 032-880-7947)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 하였습니다.

□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구역

1.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 기 정



○ 변 경



2. 토지이용계획도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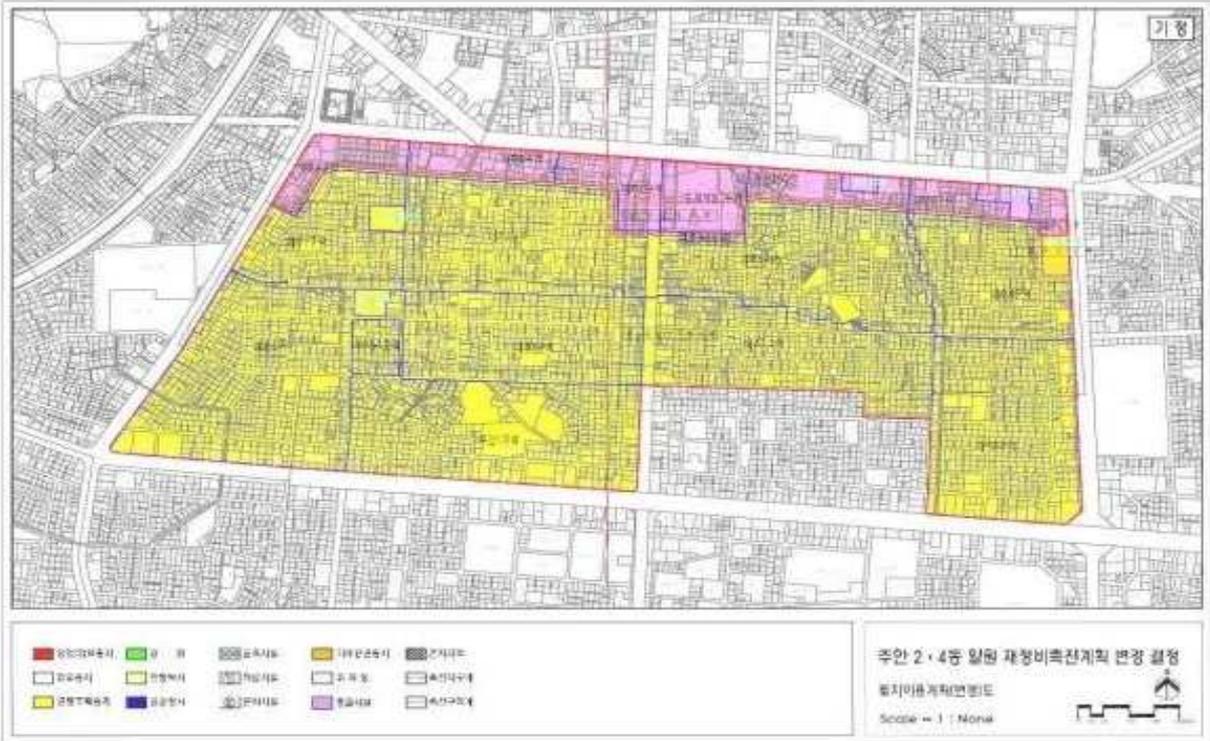


○ 변경



3.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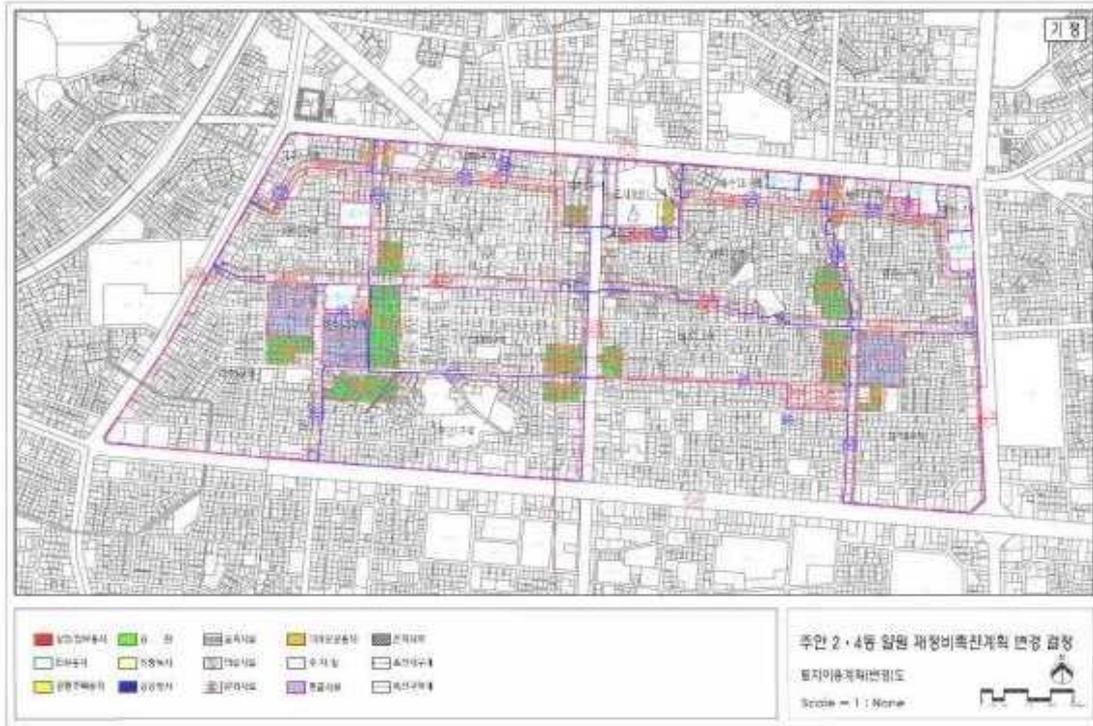


○ 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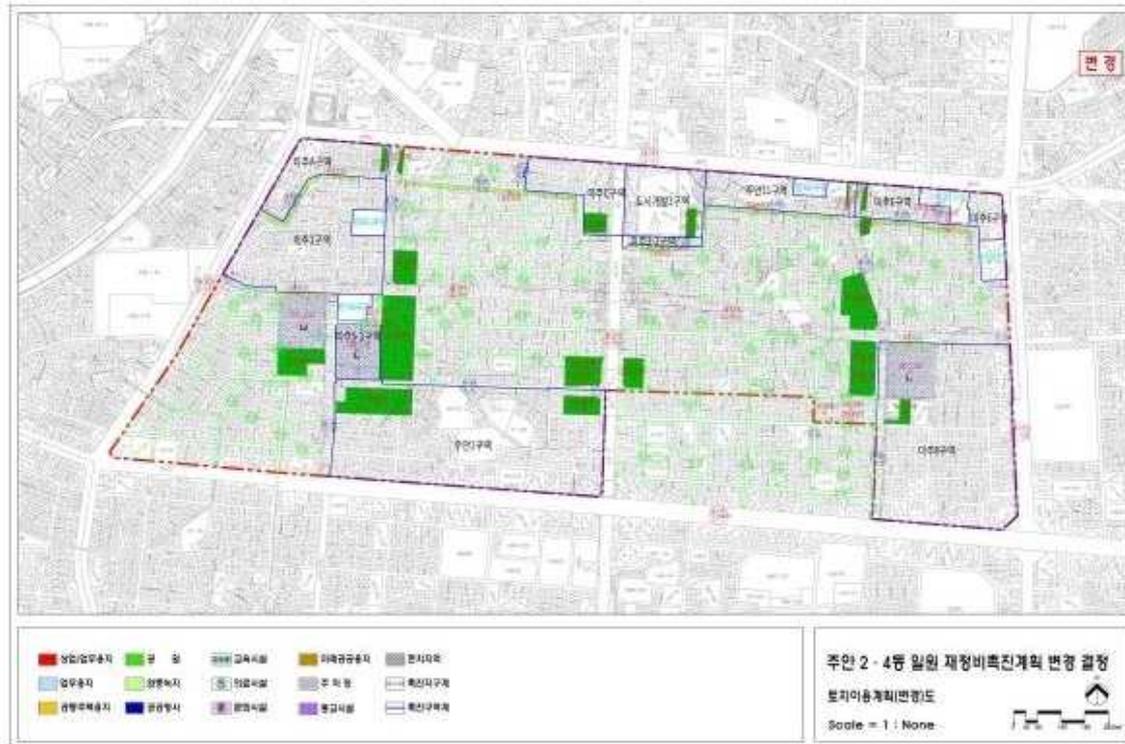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기 정



○ 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54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산134-1 공공주택(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4 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명: 덕적 우리집 (영구임대주택)
2. 공공주택 사업자
 - 가. 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인천광역시장
 -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 사업개요

구 분	개 요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산134-1	
나. 사업면적(m ²)	2,410	
다. 대지면적(m ²)	2,410	
라. 연 면 적(m ²)	1,117.69	
마. 규 모	공공주택(영구임대주택) 1동 2층	

4. 사업비: 2,972,174천원(주택도시기금 2,286,288천원)
5. 사업기간: 2018. 12. ~ 2019. 12.
6. 의제 되는 사항: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기타: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032-440-3472) 및 주거재생과(032-440-348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55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근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사근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원녹지과(509-69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8. 10. 29.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8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근린공원)
- 2) 명 칭 : 사근근린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단위 : m²)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총면적	도로광장	조경시설	유희시설(놀이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화장실)	녹지	최초결정
당초	사근근린공원	근린공원	15,914.5	2,901	96	-	488	24	12,405.5	1989.10.23. (건고-592호)
변경	사근근린공원	근린공원	15,914.5	2,854.7	96	488	-	86.7	12,389.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8. 12. 31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구·동	지번		공부	편입		
부평구 갈산동	384	공원	6,730.3	6,730.3	부평구	
부평구 갈산동	384-1	공원	502.7	502.7	부평구	
부평구 갈산동	375	공원	3,346.8	3,346.8	부평구	
부평구 갈산동	375-2	공원	359.6	359.6	부평구	
부평구 갈산동	376	공원	4,975.1	4,975.1	부평구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실시계획인가 조건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제 규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한다.
2. 본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및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즉시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4. 사업 착수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른 관련 사항을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소음 및 날림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방음벽 설치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사전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5.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지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사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비대상 필지에 대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재산관리기관과 협의 후 사용 또는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7.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시 제시된 관련기관(부서)의 협의의견은 사업에 반영하여 협의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보완 협의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8. 기타 시행과정에서 각종 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8-256호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일원 공유수면(수도권매립지' 1공구)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38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매립실시계획(변경) 승인 연월일 : 2018년 10월 29일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나.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다.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 매립목적 : 수도권발생 쓰레기 매립지 조성(변경없음)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일원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1989. 6. 15 ~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시
6.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 가. 변경사유 : 수도권매립지 내 폐자원에너지타운 및 차폐수림대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
 - 나. 변경사항 :
 - 실시계획 승인 면적 변경(당초 : 9,169,598㎡ , 변경 : 9,670,804㎡)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게재생략(변경없음)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57호

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항만시설(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항만공사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8-96호)된 “인천북항(북측)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항만과(☎440-4817),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7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10. 29.

인천광역시장

1.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174,122.0	-	174,122.0	100.0	
일반공업지역	172,522.9	-	172,522.9	99.1	
자연녹지지역	-	증) 1,166.6	1,166.6	0.7	
미지정지역	1,599.1	감) 1,166.6	432.5	0.2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원창동 435번지	일반공업 지역	-	172,522.9	350	• 기 결정고시된 사항으로 일반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없음
-	원창동 436번지	미지정	자연녹지 지역	1,166.6	80	• 인천북항(북측) 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미지정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효율적 관리 도모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교통시설

1) 항만

■ 항만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항만	인천 북항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석남동, 가좌동, 동구 송현동 일원	3,344,410	증)432.5	3,344,842.5	인고 제2002-168호 (‘02.07.22.)	

■ 항만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항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석남동, 가좌동, 동구 송현동 일원 • 면적 : 3,344,410㎡ → 3,344,842.5㎡ (증)4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사항 반영

나. 유통 및 공급시설

1)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조서(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

1) 세부시설 조성계획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m ²)	
A	①	서구 원창동 435번지	28,747	
	②	서구 원창동 435번지	17,676	
	③	서구 원창동 435번지	17,826	
	④	서구 원창동 435번지	13,714	
	⑤	서구 원창동 435번지	16,911	
	⑥	서구 원창동 435번지	15,034	
	⑦	서구 원창동 435번지	15,825	

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세부시설명	용 도	면적(m ²)	비 고
신설	①	항만	항만배후단지	복합물류	28,747	
신설	②	항만	항만배후단지	복합물류	17,676	
신설	③	항만	항만배후단지	복합물류	17,826	
신설	④	항만	항만배후단지	복합물류	13,714	
신설	⑤	항만	항만배후단지	복합물류	16,911	
신설	⑥	항만	항만배후단지	복합물류	15,034	
신설	⑦	항만	항만배후단지	복합물류	15,825	

4. 기타조서

구 분	시설명	면 적(m ²)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소 계		-	48,389		
	도 로	-	32,986		
	녹 지	-	13,211		
	군부대	-	2,192		

5. 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끝.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58호

공공주택 사업계획 변경승인(검단신도시 AB14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 검단신도시 AB14BL 공공주택(공공분양주택)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6 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명: 인천 검단신도시 AB14BL 공공주택건설사업 (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 (변경 없음)
 -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인천도시공사 사장 황효진,
금호산업(주) 대표이사 서재환
경화건설(주) 대표이사 박창완
 -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송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20번길86-53
3. 사업개요 (변경 없음)

구분	개요	비고
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B14BL	
나. 사업면적(㎡)	74,574	
다. 대지면적(㎡)	74,574	
라. 연면적(㎡)	220,690.84	
마. 규모	아파트 13동, 지하2 지상 29층 1,4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변경) : 484,265,632천원
 - (기정) 주택도시기금 7,260,000천원
 - (변경) 주택도시기금 108,900,000천원
5. 사업기간: 2018. 9. ~ 2021. 5.(변경 없음)
6. 기타: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032-440-3472) 및 인천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처 (032-260-581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44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 합니다.

2018. 10. 22.

인천광역시장

 등록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비고
당초	제2015-0- 인천광역시-36호	다사랑청소년 봉사단인천지부	안화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5, 4층 (학익동, 다원빌딩)	○청소년의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교육 및 봉사활동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보호 육성 활동	
변경	상 동	상 동	이병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81-19 (학익동, 재정빌딩)	상 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449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인천광역시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제320342호	주식회사 비전제어시스템 정운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43번길 16 (고잔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450호

인천광역시 도시교통 종합계획(안) 열람공고(교통법정계획 5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및 제8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9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보행교통개선계획의 내용을 포함·통합하여 수립한 인천광역시 도시교통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7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를 실시하오니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5일
인천광역시장

1. 계획개요

가. 계획명칭 : 인천광역시 도시교통 종합계획(안)

-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17~2036)
-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2017~2021)
- 인천광역시 대중교통계획(2017~2021)
- 인천광역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2017~2026)
- 인천광역시 보행교통개선계획(2017~2021)

나. 주요내용 : 게시 자료 참조

- 도시교통 현황 및 전망
- 교통정책 방향 및 목표
- 부문별 계획 : 철도, 도로, 공항·항만, 버스, 택시, 친환경, 수요관리, 보행, 자전거, 교통안전, 교통약자, 주차, 지능형교통, 교통운영, 화물 등
-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

2. 열람안내

가. 열람기간 : 2018년 10월 25일 ~ 2018년 11월 14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 열람기간 중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열람 가능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교통정책과

※ 요약자료게시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교통자료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4일 (수) 18:00까지

나. 보내실 곳

-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교통정책과

- 메일 : flow0water@korea.kr

- 팩스 : 032-440-8668

다. 의견서 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획(안)에 대한 의견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교통국 교통정책과(☎ 032-440-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2018-145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대로1-11호선, 중로1-57호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류11호선 및 중로1류57호선 , 사업명: 인천도로 계획시설[도로: 대로1류11호선 외 1개 노선 도로확장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440-3794), 서구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11호선, 중로1류57호선]사업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11호선 외 1개 노선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대로1류11호선 : L=180m, B=35~39m (A=350㎡, 도로폭 3.5m 확장)

- 중로1류57호선 : L=172m, B=20~33m(A=404.6㎡, 도로폭 2m 확장)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롯데우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조천휘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122번길 19, 원광빌딩3층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0. 06. 0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서구 석남동	492-1	대	5,197.7	237	최*영	
서구 석남동	492-2	도	101.8	8.1	우람주택건설(주)	
서구 석남동	493	대	5,416	473	최*영	
서구 석남동	633	도	6,051.6	36.5	인천광역시 서구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불 임]

편 입 조 서

○ 사업명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로1-11호선, 중로1-57호선

연번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관리종류	관리자주소	성명	
1	서구 석남동	492-1	대	5,197.7	237.0	최*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성동로 20, 현암아파트 *동 ****호(용원동)				
2	서구 석남동	492-2	도	101.8	8.1	우람주택건설주식회사	미추홀구 주안동 1****				
3	서구 석남동	493	대	5,416.0	473.0	최*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성동로 20, 현암아파트 *동 ****호(용원동)				
4	서구 석남동	633	도	6,051.6	36.5	인천광역시 서구					
계					754.6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8-1452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비고
상신 종합건설(주)	김영환	2018.10.24.	인천180017	999,000천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림로 327, 2층 (도화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45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 합니다.

2018. 10. 25.

인천광역시장

 등록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비고
당초	제2001-0-인천광역시-14호	아시아태평양 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인천광역시지부	박제완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982 재향군인회관 307호	○유족 실태조사와 상호협조 ○유해발굴 봉안추진 및 위령제 봉행 등	
변경	상 동	상 동	상 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150번길 2-28(송의동)	상 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45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인천광역시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제320343호	(주)유티에스 고재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25, 1102호(주안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463호

일반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측량업을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 10. 26.

인천광역시장

1. 공고기간 : 2018. 10. 26. ~ 2018. 11. 5.

2. 일반측량업 등록 현황

업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	비고
일반측량업 (04-004250)	신정개발	신정근	인천광역시 중구 홍예문로 56, 1층 (내동)	2018. 10. 26.	

인천계양소방서공고 제2018-13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인천계양소방서장

2018년 10월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1. 표지사용 정지 일자 : 2018. 10. 26.(금)

2. 대 상

대상명	대표자	위 치	업 종	비고
까르르스타	장○애	계양구 계양대로 82, 5층(작전동)	일반음식점	
형성축협한우프라자	엄○익	계양구 아나지로 341, 2층(작전동)	일반음식점	

3. 정지사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8-37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블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블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29.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인천도시관리계획(블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내용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계획 【변경】

－ 단독 및 다세대주택용지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획지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A-1	4	2,811.3	1	240.7	243.7	
			2	274.6	244.1	
			3	281.5	283.5	
			4	284.1	284.1	
			5	279.7	305.3	
			6	332.4	332.4	
			7	288.1	351.1	
			8	285.6	259.4	
			9	278.7	215.0	
			10	265.9	292.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위치	획지면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A-1	5	2,767.9	1	294.0	304.8	
			2	263.9	328.1	
			3	268.6	226.7	
			4	273.2	226.8	
			5	271.7	285.0	
			6	292.4	304.5	
			7	274.6	212.0	
			8	269.7	249.9	
			9	264.8	329.0	
			10	295.0	301.1	
A-1	6	2,594.9	1	268.0	268.0	
			2	254.7	254.7	
			3	254.6	254.6	
			4	254.5	254.5	
			5	259.6	259.6	
			6	265.4	265.4	
			7	255.3	255.3	
			8	255.1	255.1	
			9	255.0	255.0	
			10	272.7	272.7	
A-1	7	2,548.5	1	256.9	259.1	
			2	254.7	230.3	
			3	254.6	230.1	
			4	254.5	229.9	
			5	247.6	318.9	
			6	253.3	329.1	
			7	255.2	230.6	
			8	255.1	230.6	
			9	255.0	230.6	
			10	261.6	259.3	
A-1	8	1,519.7	1	294.3	293.9	
			2	300.2	292.5	
			3	300.2	292.5	
			4	310.4	240.0	
			5	314.6	400.8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위치	획지면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A-2	3	3,144.0	1	304.6	342.5	
			2	317.0	336.9	
			3	323.3	320.9	
			4	323.0	264.5	
			5	297.8	300.9	
			6	350.1	355.4	
			7	324.8	340.7	
			8	310.9	269.5	
			9	303.2	269.5	
			10	289.3	343.2	

- 공동주택용지 【변경】

구 분	도면번호	위치		면적(m ²)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기정	변경	
공동주택용지	B-1	9	1	36,170.7	28,607.2	공동개발 지정
	B-2	9	2	-	7,563.5	

주) 공동주택용지의 단위개발을 위해 공동개발 지정

나. 획지의 합병 및 분할 【변경】

-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 에서 결정한 대지를 기본단위로 개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구단위계획상 필지분할가능선이 있는 대지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 사항이며, 변경기준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소 분할가능면적 이상으로 함
- 환지계획인가 후 최초1회에 한해 획지의 합병 및 분할이 가능하며, 변경기준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소 분할가능면적 이상으로 함

용 도 지 역	주 거 지 역
블로2지구 최소 분할가능면적	200m ²

○ 입안사유

: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 획지계획 변경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최초 1회에 한해 획지의 합병 및 분할을 허용하고, 공동주택용지의 단위개발에 따른 공동개발을 지정하고자 함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2018. 10. 29. ~ 11. 16.(14일 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440-5183),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5772)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 참조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97호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0. 29.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 10. 8.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공포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일부 단서조항 삭제(안 제5조의2)

○ 제1호 삭제

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11조제2항)

○ 행정부시장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건설심사과, 전화: 440-37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2(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시장은 지역중소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u>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의 공종 3. 그 밖에 시장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p>제5조의2(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p> <p>-----</p> <p>-----</p> <p>-----</p> <p>-----</p> <p>-----</p> <p>-----</p> <p>1. <삭 제></p> <p>2. -----</p> <p>-----</p> <p>3. -----</p> <p>-----</p> <p>-----</p>
<p>제11조(구성) ②위원장은 <u>행정부시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p>	<p>제11조(구성) ② -- <u>균형발전정무부시장</u></p> <p>-----</p>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98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0. 29.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가. 친환경차 시장 확대 추세에 부응하여, 하이브리드 구매시 제공되는 지역개발채권 감면금액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 나. 현재 2018년 종료 예정인 우리시 하이브리드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감면혜택을 지속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감면혜택 지원을 통해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감면금액을 종래의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개정(확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

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감면혜택을 종래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을 준용하여 2018년 12월 31일 까지 시행기로 한 것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연장)하여, 상기 감면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 재정관리 담당관, 전화 440-1663, 팩스 440-8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가.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화석연료 차량을 감축하고 친환경차 차량을 보급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하이브리드 구매시 제공되는 지역개발채권 감면액을 현행보다 확대하여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시민에게 감면혜택을 추가 지원하고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고자 함
- 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조건을 개선하여 우리시 리스차량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점차 확대 추세에 있는 하이브리드 시장을 선점하려는 시도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별표 2 제2호 자목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감면금액을 1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200만원으로 변경(감면 금액 확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
- 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상기 감면혜택을 종래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을 준용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키로 한 것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연장) 시행하여, 상기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 (제10조 관련)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1. 매입면제 기관	<p>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p> <p>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p> <p>다. 주한 유엔군과 외국정부 기관</p> <p>라. 주한 국제 기구와 원조 단체</p> <p>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p> <p>바. 민·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만을 면제한다.</p> <p>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p> <p>아.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p>	
2. 매입면제 대상	<p>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 등록</p> <p>나.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의 자동차 신규 등록</p> <p>다. 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 이전등록</p>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p>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 등록(장애인 1인1대에 한함)</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p> <p>(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p> <p>(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p> <p>(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p> <p>마. 각종 허가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점용·사용허가 ○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과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p>다만, 농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농어업·농어촌 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가 정한 바에 따름.</p> <p>바.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p> <p>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p> <p>아. 개별 법령 및 조례의 위탁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p> <p>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되, 감면시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p>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개수·건조·수선하는 경우와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 인·허가 (「지방세법」 제108조에 한함)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자동차 등으로 교환 받는 자동차의 등록(「지방세법」 제268조에 적용대상에 한함)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 매입</p> <p>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차량 전담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자동차 이전등록</p>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8-23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인천교육에 대한 홍보 및 대시민·대언론 공보 강화와 이를 통한 교육공동체의 소통·협력 극대화를 위해 공직 내·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하기 위해 소통협력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소통협력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2018년 11월 17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감(참조 : 노사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sc6110@ice.go.kr

2)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과
-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3) 팩스 : 032-420-8456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032-420-84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 “붙임1”

5. 개정규칙안 : “붙임2”

< 붙임2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통협력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소통협력담당관) ① (생략)</p> <p><신설></p> <p>② (생략)</p>	<p>제4조(소통협력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통협력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 제29조4(개방형직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1조(개방형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계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시·도는 5급 이상, 시·군·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개정 2012. 12. 11.>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개방형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본청 소속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 등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군·구

인천광역시미추홀구고시 제2018-153호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454-4번지 일원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의 민영주택건설사업변경(3차)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0. 2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사업명칭: 인천 주안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
2. 사업주체: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3. 사업시행위치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454-4번지 일원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
 - 나. 대지면적: 20,386㎡
 - 다. 규 모: 지하8층~지상44층,
공동주택 86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의료시설,
판매·문화및집회시설·제1,2종근린생활시설
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2018. 10. 16.
5. 주요변경사항
 - 사업주체: 에스엠씨피에프브이(주)외1→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6. 사업시행기간: 사업계획승인일~2022. 7. 31.(4개월 연장)
7. 의제처리사항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